

대전광역시 대덕구

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	보
http://www.daedeok.go.kr	

선	기관(부서)의 장
람	

제2019-70호
2019. 11. 1.(금)

차 례

고 시(2)

- 도시관리계획(와동소공원 조성) 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(고시 제2019-123호)1
-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(고시 제2019-124호)5

공 고(5)

- 도로점용(굴착) 허가내용 공고(공고 제2019-912호)6
-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(공고 제2019-916호)9
-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폐지 공고(공고 제2019-917호)7
- 미신고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계획 및 자진신고 안내 공시송달 공고(공고 제2019-921호)10
- 도로점용(굴착) 허가내용 공고(공고 제2019-923호)11

공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도시관리계획(와동소공원 조성) 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9번지 일원,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시민의 건강 및 휴식·소통의 장으로써의 기반 마련을 위해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(와동소공원 조성) 결정(최초)에 대하여,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와동소공원 조성) 결정(최초) 고시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2019년 11월 1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가.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구분	도면번호	공원명	시설의세분	위치	면적(㎡)	최초결정일	비고
신규		와동소공원	소공원	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9번지	1,840	대전광역시 고시 제2015-53호 (2015.4.3.)	

나. 공원조성계획 결정사유

공원명	결정내용	결정사유
와동소공원	○ 시설면적 356.07㎡	○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5-53호(2015.4.3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으로 결정되었음. ○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구역 내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, 휴식, 교류공간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원조성계획 수립코자 함.
	- 기반시설 263.21㎡	
	- 휴양시설 85.06㎡, 2개소	
	- 조경시설 7.80㎡, 17개소	
	- 운동시설 5개소	
	- 관리시설 12개소	
	○ 녹지면적 1,483.93㎡	

다.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

1) 공원조성계획 결정 총괄조서

구분	공 원 면 적 (㎡)			건 축 면 적 (㎡)		비 고
	계	시설면적	녹지면적	바닥면적	연면적	
-	1,840	356.07	1,483.93	-	-	시설율 19.35% (법정 20%이내)

2) 공원조성계획 결정 시설조서

구 분	부지면적(㎡)	구성비(%)	건축면적(㎡)		비 고	
			바닥면적	연면적		
합 계	1,840.00	100.0	-	-		
시설소계	356.07	19.35	-	-	시설률 : 19.35%	
소계	263.21	14.31	-	-		
기반	광장	247.95	13.48	-	-	
시설	도로	15.26	0.83	-	-	
휴양시설	85.06	4.62	-	-		
조경시설	7.80	0.42	-	-		
운동시설	-	-	-	-		
관리시설	-	-	-	-		
녹지	1,483.93	80.65	-	-	녹지율 : 80.65%	

3) 공원조성계획 결정 세부시설조사

시설 구분	도면 표시번호	세부 시설명	부지면적(㎡)	규모	건축면적		비 고
					바닥면적	연면적	
총계			1,840.00	36	-	-	
시설소계			356.07	36	-	-	시설률 : 19.35%
기반 시설		소계	263.21	-	-	-	도로조서 참고
		도로	247.95	-	-	-	
	가	광장	15.26	-	-	-	
휴양 시설		소계	85.06	2	-	-	
	나-1	휴게소	70.12	1	-	-	
	나-2	휴게소	14.94	1	-	-	
조경 시설		소 계	7.80	17	-	-	
	다-1	파고라	-	1	-	-	
		평의자	-	3	-	-	
		등의자	-	8	-	-	
		야외테이블	-	5	-	-	
	다-2	앞음벽	7.80	-	-	-	19.5m
운동 시설		소계	-	5	-	-	
	라	체력단련시설	-	5	-	-	
관리 시설		소계	-	12			
		보완등	-	10	-	-	
		CCTV	-	2			
녹 지			1,483.93	-	-	-	녹지율 : 80.65%

4) 도로 결정 세부조서

등급	류별	도면표 시번호	폭원 (m)	연장 (m)	면적(m ²)	기능	기점	종점	비고
계				142	247.95				
소로	3	1	2.0	60.0	112.69	산책로	나-1	대로1-2호선	와동
	3	2	1.5	24.0	37.25	진입로	대로 1-2호선	소3-1	"
	3	3	2.0	6.0	12.47	산책로	가	나-1	"
	3	4	1.5	24.0	38.67	산책로	가	소3-2	"
	3	5	1.5	19.0	31.98	산책로	소3-2	소3-1	"
	3	6	1.5	9.0	14.89	진입로	와동2구역 단지내도로	소3-1	"

라. 관계도면 : 기재 생략. 끝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11월 1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

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부여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 사유	도로명 부여사유 (도로명 고시일)	비고
중리동 400-13	중리로21번길 6-14	2019. 11. 1.	건물신축	중리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2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(☎042-608-5305)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<http://www.juso.go.kr>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◆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도로점용(굴착) 허가내용 공고

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CNCITY에너지가 신청한 도로의 점용(굴착)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번호	노선명	굴착목적	굴착구간	매설관경 (mm)	포장종류	연장 (m)	공사기간	일시점용 (㎡)	영구점용 (㎡)
1	신일서로 68번길	도시가스관 철거	신일동 1675-5번지 앞	315	아스팔트	2.0	'19.10. ~ ' 19.11. (착공일로부터 20일)	4.00 (착공일로 부터20일)	-
2	신일서로 68번길	도시가스관 매설	신일동 1675-5번지 앞	225	아스팔트	9.0	'19.10. ~ ' 19.11. (착공일로부터 20일)	10.08 (착공일로 부터20일)	2.0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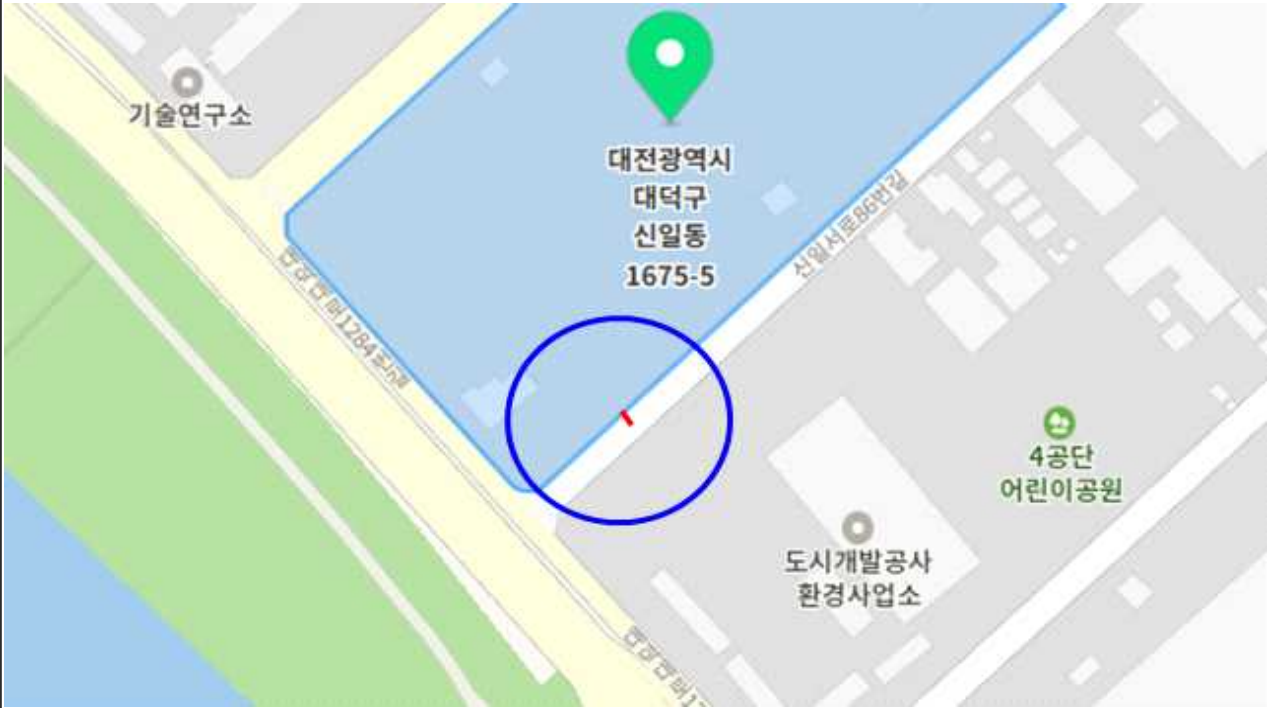
2019년 11월 1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위치도 및 사진대지

굴착위치	신일서로68번길 71(신일동1675-5번지) 일원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위 치 도



굴착위치	신일서로68번길 71(신일동1675-5번지) 일원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사 진



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

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25-2번지 상 건축물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「건축법」 제45조(도로의 지정·폐지 또는 변경)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.

2019년 10월 28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아 래

1. 공고하는 사항

구 분	위 치	도 로 구 분			소유자
		면 적	너 비	길 이	
건축법상 도로지정	목상동 25-2	25.0㎡	6.0m	17.1m	정명철
		60㎡	3.0m	6.2m	
		31.4㎡	6.0m	19.7m	

2. 기 타

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(☎042-608-5154)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폐지 공고

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367-4번지 상 건축물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“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08-21호” 로 지정 공고한 도로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45조(도로의 지정·폐지 또는 변경)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폐지 공고합니다.

2019년 11월 1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아 래

1. 공고하는 사항

구 분	위 치	도 로 구 분			소유자
		면 적	너 비	길 이	
건축법상 도로폐지	장동 367- 4	21.5㎡	6m	36m	이상옥

2. 기 타

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(☎042-608-5153)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미신고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계획 및 자진신고 안내 공시송달 공고

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100(사유지)에 위치한 미신고 지하수 시설물에 대해 방치공 원상복구 계획 및 자진신고 안내를 통보하고자 하나, 미신고 지하수 개발·이용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19년 11월 1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제 목 : 미신고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계획 및 자진신고 안내 공시송달
2. 공시송달 대상자

연번	성명	주소	불법 지하수 위치	비고
1	미상	미상	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100(평촌1길 상 도로)	

3. 공고기간 : 2019. 11. 1.(금) ~ 2019. 11. 15.(금)
4. 게시장소 :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, 전국 시군구 게시판
5. 근거법규 : 지하수법 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
6. 공고내용

-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100번지(사유지) 내 지하수 개발시설은 신고 되지 않은 불법 시설(방치공)로 「지하수법」 제15조(원상복구 등)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폐공조치 하고자 원상복구 의무자인 지하수개발·이용자를 파악하고자 하오니, 2019.11.15.(금)까지 우리 구 건설과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,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구에서 원상복구 조치[2019.11.15.(금) 이후]할 예정입니다.
- 동 시설을 계속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(지하수개발·이용의 신고)에 의거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.

7. 문 의 처 : 대덕구청 건설과 하수하천팀 ☎ 042)608-5226

도로점용(굴착) 허가내용 공고

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CNCITY에너지로부터 신청한 도로의 점용(굴착)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번호	노선명	굴착목적	굴착구간	매설관경 (mm)	포장종류	연장 (m)	공사기간	일시점용 (㎡)	영구점용 (㎡)
1	비래서로 8 1번길 2~ 비래서로 8 5	도시가스관 매설	비래동 15-13번지 일원	63, 160	아스팔트 투수콘	51	'19.11. ~ ' 19.11. (착공일로부터 20일)	61.20 (착공일로 부터20일)	8.06 (허가일로 부터10년)

2019년 11월 1일

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위치도 및 사진

굴착위치	대전 대덕구 비래동 151-13번지 일원
<p>위 치 도</p> 	

굴착위치	대전 대덕구 비래동 151-13번지 일원
<p>사 진</p> 	